#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현행 공사 집행에 있어서 읍면에 위임된 2,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이 소액이라는 읍면장의 공사 집행금액 상향조정 건의가 있으며,

○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재정여건 등 경북도내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읍면에 위임된 공사집행금액 2,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을 3,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, 읍면의 행정 능률의 향상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

〔별표〕 위임사무명(권한위임)중 - 재무회계규칙에 관한사항

1. “2,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”을 “3,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”으로 상향조정

3. “2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”를 “3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”로 상향조정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및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의 효율적인 실행과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

○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들의 균형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고자 현재 읍면장에게 위임된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□ 결론적으로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**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#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**의회전문요원**을 신설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확대

■ 의회 전문요원 신설(의회기능 보강)

4. 검토의견

**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오늘날 지방행정환경의 다변화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, 아울러 독립성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**특히, 인적구성원의 전문화**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

□ 따라서 금번 성주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**「의회 전문요원」**을 신설하여 의회기능을 보강내용으로 한 개정 조례안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**참고적으로**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「**별정직 공무원**이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」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**□ 결론적으로**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**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#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대한 기준완화 등으로 인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

1)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
2)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

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
1)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
다.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1)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행정안전부(지방공무원과) 에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대한 기준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**지방공무원법개정**(08.12.31)에 따라 2009년 2월에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개선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

○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**「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개정안」**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였습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**

○ 우리군 에서도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, **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#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리장의 활동 및 임무는 증가되나 수당이 적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, 리장의 업무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리장의 상해보험 가입, 교육훈련,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, 체육행사 그 밖에 퇴임 리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○ 제명 띄어쓰기 등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**본 개정 조례안은**

○「두음법칙」에 따라 “제명”일부변경(리 → 이) 과 “제명”일부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으며,

○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이장들의 공무수행 중 재난대비 상해보험가입, 교육훈련,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수여 등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**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**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